

2025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내

최종작성일자 : 2025.02.03

- 연말정산은 2월 중 진행되며, 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는 **2025년에 근무했던 4대보험 가입근로자 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 외의 분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는 제외)
- 각 근로자별로 폴더에 자료를 저장하여 압축하신 뒤, **2월 11일까지**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송부하시는 경우 **이메일 제목에 업체명을 필히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의 경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주민등록등본만을 제공해주시는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그 외 기타 추가자료를 제공하여 '입력이 진행되는 근로자'의 경우 인당 추가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 서류	요건	
기본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상세안내 1. 확인)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 자료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5년 중 타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경우	
추가 자료	기본공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및 장애인 해당자 필히 표시, 상세안내 2. 확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요건 하단 상세내용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중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부양가족 중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부양가족 중 기초수급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or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상세안내 3. 확인)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특별 세액공제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영수증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등	기부금 단체, 고행사랑기부단체, 종교단체, 정치자금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가능)
		교복구입비 영수증	부양가족 중 자녀의 교복구입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교육비 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영수증,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월세 세액공제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명의 월세납입송금증	- 연봉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85㎡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이자상환내역)	무주택 혹은 1주택 보유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불가)을 구매하고 구매일 전후 3개월 이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차용증 등 사본 각종 상환서류 (상세안내 4. 확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 투자확인서 등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상세안내 5. 확인)	근로계약 당시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서	25년 중 혼인신고가 진행된 경우	

상세안내 1. 연말정산 PDF자료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방법

1.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재문 사업자전환 회원정보조회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자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소득·세액공제 자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연말정산 일괄제공

2. 부양가족 인적사항 입력 및 자료제공동의 신청(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료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현황 조회

제공동의 진행상황
(팩스신청, 온라인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

본인인증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세무서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상세히 보기 | 상세히 보기 | 상세히 보기 | 상세히 보기

○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료제공자와 조회자와의 관계 의 선택 동의범위 부터 이후연도 자료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신청하기

3.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재문 | 사업자전환 | 회원정보조회 | 로그아웃 | 인증센터 | 화면크기 80%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근로·자녀장려금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영수증 발급서 자료 제출 | 연말정산 일괄제공

4.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후 시작

연말정산간소화

한재문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0명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제공 조회/취소 이동 |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자료보유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 따라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며, 잘못 공제받는 경우 신고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고 간소화자료를 열람하시겠습니까?

위 내용에 동의하고 간소화자료를 열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볼게요.

5. 전체 월 선택 → 개인정보 공개함 → 비밀번호 설정안함 → 한번에 조회하기 → 내려받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자료 제출 | 예상세액 계산 | 공제신고서 작성

귀속년도: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체 월 해제 | **한번에 조회하기**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보기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안함 공개함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설정함

내려받기 | 인쇄하기 | 전자받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조회하기 Q	건강/고용보험 조회하기 Q	국민연금 조회하기 Q	보험료 조회하기 Q
의료비 조회하기 Q	교육비 조회하기 Q	신용카드 조회하기 Q	직불카드 등 조회하기 Q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Q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조회하기 Q	주택자금/월세액 조회하기 Q	주택마련저축 조회하기 Q
장기집합투자증권거래/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하기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하기 Q	기부금 조회하기 Q	장애인증명서/발달장애서비스 이용증명 조회하기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 해주세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25년 1월~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24.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포함된 항목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전체 선택 → PDF로 내려받기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PDF가 미검증 표시가 될 경우 꼭 읽어주세요

내려받을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전체 선택 초기화

소득기준조과	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비
신용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불카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발달장애서비스 이용증명

받기 PDF로 내려받기

성심세무회계

상세안내 2.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서 다음의 연령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한 사람이 동시에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받지 못함.

- 자녀(만20세 이하) : 2005.01.01. 이후 출생자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1965.12.31. 이전 출생자
-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2005.01.01.이후 출생자이거나, 1965.12.31.이전 출생자일 것
- 배우자 및 장애인 : 나이불문

*연간소득금액 계산방식 : 다음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순이익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강의료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금융소득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음)

상세안내 3.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가 가능한 '장애인'의 요건 및 입증서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자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으로 확인, 관할주민센터에서 발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가능

3. 항시 치료를 요한 중증환자, 질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로 암, 개심술 수술한 중증 심장질환자, 개두술 수술한 중증 뇌혈관 질환자)

: 의료기관을 통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첨부서류 확인

상세안내 4. 주택임차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린 경우 필요 서류

1. 기본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가능

2. 추가 요건

- (1)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2) 임대차계약서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차입하여야 함(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3개월)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야 함

3.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③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송금확인증 등 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세안내 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청년 90%, 200만원 한도)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

1. 근로자 요건(최대주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인은 불가능)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만15~34세 이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1년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우로 퇴직 후 3년~10년 이내 재취업한 여성)

2. 기업 요건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일 것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② 제조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③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⑥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⑨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⑩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업종

- ①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필요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연령을 적용할 경우)병적증명서
-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별첨)

4.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소득세감면 신청하는 방법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지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조회/삭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제출 소득·법인세 관련

소비지세 관련 자료 제출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예탁증권 관련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실적 제출/내역조회
-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출차지분등변경등지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 STEP 1.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 제출기한이 있는 과세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과세자료제출 요약정보는 [STEP2.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적용대상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식 선택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제출방식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

1. 기본사항 입력
2. 상세내역 입력
3. 오류검증
4. 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1. 회계프로그램변환 과세자료 작성
2. 프로그램실행 후 오류 검증
3. 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 원천징수의무자수는 한 파일에 500개로 제한되며, 500개 초과분은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 오류건수가 1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더이상 오류 검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후 근무지 상호명 및 대표자명 기재 → 저장 후 다음 이동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01.기본정보 입력

한** 님 | 890817-*****

재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02.상세내역 입력

03.과세자료 제출

기본정보 입력

기 작성한 제출명세서는 '제출명세서 불러오기'로 불러옵니다.

○ 과세년월, 제출년월

*귀속년도	2026	년	
*제출년월	2026	년 02	월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주업종코드	741201	전문서비스업 사무사업
*상호명	성심세무회계			*대표자(성명)	한재문

저장 후 다음 이동

- 인적사항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Step 1. 과세자료제출 Step 2. 제출내역

01.기본정보 입력

02.상세내역 입력

03.과세자료 제출

한** 님 | 890817-*****

재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상세내역 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 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입력한 자료를 수정하시려면 화면 하단의 목록에서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수정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적용대상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적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성명	한재문		
*취업자유형	청년		*취업일	2019-02-14		
*중소기업 최초 취업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선택	년	선택	개월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2019-02-14	-	2024-02-29			

등록하기

성명 검색

선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 취업자유형코드	취업일자	감면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1 총0건(1/1)

이전

과세자료 작성완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6층 전층(역삼빌딩)
전화 : 02-2088-2010. 휴대폰 : 010-4828-3775. 팩스 : 02-6280-3775
이메일 : sungsimtax@gmail.com